

대경강원권역R-WeSET사업단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학협력 사업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경강원권역R-WeSET(이하 “사업단”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사업단은 대구/경북/강원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여성공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대생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2. W-STAR 프로그램의 구축, 운영, 개선, 정착, 확산
3. 여대생의 문화적/국제적 감각 고취 및 학문 영역의 다각화 유도
4. 여공학인의 전공역량 및 취/창업 역량 강화
5. 학생별 전문화, 특화, 융합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
6. 대구/경북/강원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
7. 프로그램 성과의 활용, 홍보 및 지속적 관리

제3조(소재지) 사업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공과대학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부서 및 업무)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연구부, 취창업지원부, 자체평가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연구부
 - 가. 교내 학술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나. 여학생 특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다.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 라. 공대 여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방안 수립
 - 마. 여중고생의 진학 촉진 프로그램 운영
2. 취창업지원부
 - 가. 공대 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나. 산업체 현장탐방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 다.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라. 산업체 수요조사 및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
 - 마. 교내 타 사업단과 프로그램 조율 및 교류
3. 자체평가부
 - 가. 위탁 및 협동사업 자체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의견반영
 - 나. 사업진행 및 결과보고를 통한 운영결과 점검
 - 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제5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 부단장과 사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리 및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실무자로서 대외적 기능을 수행하며, 소관업무를 관리 및 수행한다.
- 제7조(임면)** ① 단장과 부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장이 임면한다.
② 각 부장은 단장이 임명하며,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③ 직원 및 연구원의 자격, 직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단장과 부단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으로 한다.
-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운영목표 및 세부목표 조정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실적보고,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재정 및 회계

- 제13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정부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산업체 지원금
 4. 교비
 5. 기타 수입

제14조(회계 및 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예산편성)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은 소속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사업단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서 및 상담자료, 사업장 명부, 개인별 명부 등 관련 정보는 관계법령에 맞추어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센터 시설 등의 이용) ① 사업단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 이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지침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